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LA04

본인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약정합니다.

제1조(거래조건)

- 대출기간: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
- 대출한도: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의 _____ % 이내(추후 변동가능)

증권번호	상품명	대출이자율			이자납입일	대출금액
		금리구분 (변동/확정)	해약환급금 부리이율(A)	가산금리(B)		
				1.50%		

- *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은 보험계약대출 발생일 기준이며 매월 변동됩니다.
- * 즉시변제 및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2조부터 제9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 ①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 ①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내로 하며, 본인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은 당사에 등록된 은행계좌(계약자=예금주)가 있는 경우 전화로 상환 또는 직납할 수 있다.

제4조(대출이자 납부 등)

- ①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최초로 이자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②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이자자는 원금에 가산된 금액으로 계산되고, 그 후 이자는 미납이자자가 더하여진 보험계약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실제 보험계약대출 원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 ③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④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 ⑤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모바일창구를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다. 은행 자동이체의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여, 회사는 다음 이체일에 재청구한다.
- ⑥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자동대출납입의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매월 이자납부일에 해약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이자상당액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한다.
- ⑦ 신규 및 추가 보험계약대출 후 당일 상환시 1일분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⑧ 추가 보험계약대출시 기존 대출금의 미납이자자가 있는 경우 추가 대출금에서 기존 대출금의 미납이자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 ⑨ SAFE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2015.8.4일 이후 이율확정기간 내 추가 대출시 보험계약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1.5%를 적용한다.

제5조(즉시변제)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1.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2. 2002.8.1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이 납입 지연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3. 2002.8.1일부터 2005.3.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LA04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4. 2005.4.1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는 때

-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계할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 보험계약자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자는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등에 지급한다.

제7조(주소 등 변경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인지세의 부담)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 및 부대비용은 보험계약자와 회사가 50:50으로 부담한다.

제9조(기타 안내)

- ① 2005.4.1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상품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해지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며, 부활시에 계약자는 미납된 이자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5.4.1일 이후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이자를 공제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계약자 확인 (방문신청시)

주소			
휴대전화		e-mail	
안내물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SMS

본인(보험계약자)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서명(인)	친권자(후견자)	서명(인)
		대리인(위임받는자)	서명(인)

